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7회 정례회
2018. 09. 06.(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8년 08월 28일

○ 회부일자: 2018년 08월 31일

3.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45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종료(2018. 10. 0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위탁기관:「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 現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명지원(‘15.11.16.～’18.10.1.)

○ 위탁 주요사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5.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아동복지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충청북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음

○ 종합의견

-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와 교육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 아동학대 관련 사무는 아동심리와 피해아동 행동분석 등 아동관련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 사례별 대응방법, 학대 아동의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됨.
- 다만,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족 내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해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영향이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시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 운영경험,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충청북도 및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

□ 도내 기관현황 (3개소)

시설명	최근위탁일 (최초설치일)	종사자수	예산액 (천원)	소재지	관할구역	수탁법인
계		**49**	**1,662,144**			
충청북도 (류경희)	2015.11.16. (2000.09.25.)	22	746,268	청주시 율량동	청주,증평,진천,음성	굿네이버스
충북북부 (나문규)	2016.10.26. (2004.05.27.)	16	542,742	제천시 청전동	충주,제천,단양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충북남부 (정현호)	2015.11.16. (2006.12.8.)	11	373,134	옥천군 옥천읍	보은,옥천,영동,괴산	명지원

□ 기관별 운영실적('17~'18.6월말)

구 분	충청북도		충북북부		충북남부	
	'17년	'18.6월말	'17년	'18.6월말	'17년	'18.6월말
신 고 접 수	678건	329건	475건	215건	243건	127건
학 대 사 례	507건	211건	200건	115건	175건	75건
현 장 조 사	1,571건	837건	989건	351건	571건	180건
서 비 스 제 공	15,801회	4,178회	13,891회	6,955회	11,932회	4,209회
아동학대예방 교 육 인 원	20,227명	11,107명	1,755명	1,061명	846명	304명
아동학대예방 홍 보 실 적	9,895회	6,680회	22,389회	12,182회	14,160회	10,206회
민간네트워크	1,181회	490회	287회	450회	788회	464회

참고 2 관 련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신설 2015. 3. 27>